

서울 행정 법 원

제 5 부

판 결

사 건 2017구합8 3 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
원 고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섭

피 고 보훈지청장

소송수행자

변 론 종 결 2018. 5. 29.

판 결 선 고 2018. 7. 5.



주 문

1. 피고가 2017. 1. 6.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2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7. 1. 6.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